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년 5월 일

제 출 자 : 구미시장

1. 개정 이유

- 가.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객관적인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설정 필요
- 나. 부과징수에 관한 공정성 및 일관성 확보 와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에 필요한 비용부담 현실화(현재 '95년 부과기준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가. 지방자치단체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부과기준 공고.
-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m³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 나.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개정
- 다. 하수도법에 의한 가산금 징수 기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1) 하수도법 제24조, 제24의2, 제24조의3, 제32조, 제38조
- (2) 환경부 훈령 제59호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2002. 1.14)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나목의5)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4. 시장은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 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동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른 m³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 ④ 원인자 부담금은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제15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 : 1) 건축의 승인·허가시 착공후 60일 이내

2) 건축의 신고·용도변경시 30일 이내

2. 제2호 :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허가·협의를 착공후 30일 이내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2회 균등 납부 하여야 하며 1회 납부는 착공후 1개월이내 2회 납부는 사업준공 1개월전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3. 제3호 (현행과 같음)

4. 제4호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사업 착공후 2개월 이내로 하며 다만 부담금이 2 억원이상 일때는 2회 균등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납기는 제2호(나)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와 같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가산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조례 제15조 제3항 제2호의 개정 부과액은 공포후 최초 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④ 원인자 부담금은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제15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 : 승인·허가·신고시 부담금산정 및 납부고지서 발부(납기 90일 이내) 2. 제2호 :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허가·협의를 부담금산정 및 납부고지서 발부(납기일 30일 이내)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3회 균등 납부 하여야 하며 1회 납부는 사업승인후 3개월이내 2회는 그 사업의 중간일 3회는 사업준공 3개월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제3호 (생략) 4. 제4호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사업승인후 6개월 이내로 하며 다만 부담금이 1 억원이상 일때는 3회 균등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납기는 제2호(나)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와 같다. 제18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2.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른 m²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 -----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 ----- -----, 제17조(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 ----- -----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은 -----, 1. 제1호 1)건축의 승인·허가시 착공후 60일 이내 2)건축의 신고·용도변경시 30일이내 2. 제2호 : 가. ----- 협의를 착공후 30일이내 나. -----2회 -----착 공후 1개월이내 2회납부는 사업준공 1개월전까지-----, 3. 제3호 (현행과 같음) 4. 제4호 : ----- 착공후 2개월 이내로 -----, 2 억원이상 일때는 2회----- -----, -----, 제18조(가산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조례 제15조 관련)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원인자 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 \text{㎡당 원인자 부담금 (원/㎡)} \times \text{하수발생량 (㎡/일)}$$

※ ㎡당 원인자 부담금

$$= \frac{\text{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text{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 (㎡/일)}} \times a$$

※ 총 사업비는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 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당 원인자 부담금은 제15조 제3항에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계산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매년 공고(공보)

- 하수관거원인자 부담금

$$= \text{하수관거총사업비} \times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 (㎡/일)}}{\text{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 (㎡/일)}} \times a$$

※ 총 사업비는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 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년평균 생산자 물가상승율}}{100}\right)^n$$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년수

【별표 5】 (조례 제15조 관련)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원인자 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 m^3 당 원인자 부담금(원/ m^3) × 하수발생량(m^3 /일)

※ m^3 당 원인자 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 $\frac{1}{\text{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m^3/\text{일})}$ × α

= 298,238 ≒ 298,000 원

-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내역

년 도	명 칭	사 업 비			시설용량 (m^3 /일)	보정계수 (α)	m^3 당 원인자 부담금
		처리장	차집관거	계			
1987	구미처리장1차	30,265,762,158	6,013,173,600	36,278,935,758	330,500	1.5739	172,767
1991			1,489,230,000	1,489,230,000	330,500	1.3813	6,224
1995	전처리시설	47,695,000		47,695,000	330,500	1.2391	179
1996	구미처리장2차	21,539,787,000		21,539,787,000	330,500	1.2010	78,273
1998	소각로등	2,372,587,090	2,803,195,930	5,175,783,020	330,500	1.0254	16,058
1999			1,136,300,000	1,136,300,000	330,500	1.0466	3,598
2000	도거처리장	6,329,000,000	478,964,000	6,807,964,000	330,500	1.0262	21,139
계		60,554,831,248	11,920,863,530	72,475,694,778			298,238

※ 총 사업비는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 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하수관거원인자 부담금

= 하수관거총사업비 ×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text{일})}{\text{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m^3/\text{일})}$ × a

※ 총 사업비는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 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a :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년평균 생산자 물가상승율}}{100})^n$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년수(1980 ~ 2001년 까지 22년)

년도별 물가 상승율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3.27	2.45	2.34	2.45	2.55	2.65	2.91	3.07	3.09	3.22	3.13	2.98	3.07	3.24	3.31	3.11	3.1	2.94	0.63	1.53	1.3	0.7